# 숙식용역 과업설명서

순천고등학교

- 1. 건명: 2024학년도 순천고등학교 1학년 수학여행 숙식 용역
- 2. 예 정 인 원 : 244명(학생 232명, 인솔자 12명) \* 단,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 필요 객실 수: 123실(조식 포함), 2인 1실을 기준으로 전체 인원 수용
- 3. 현장체험학습기간 : 2024. 10. 30.(수) ~ 2024. 11. 1.(금), 2박 3일
- 4. **장 소** : 서울특별시 일원
- 5. 용역조건

## 가. 여행경비

○ 숙박비 및 식비(2박 2식) (부가세 포함, 시설 사용료 등은 숙식비에 포함)

#### 나. 숙박시설

- 숙소는 「관광진흥법」제4조에 의한 관광호텔업[1264]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의한 숙박업 [5220]으로 견적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 숙소는 여행 코스를 고려하여 인근에 위치하고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3성급 이상의 호텔이어야 한다.
- 우리학교 전 학생을 **동일 건물에 수용 가능하여야 하고(분산수용 배제)**, 침실배정은 2인 1실을 기준으로 하며, 전체 인원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단, 잔여인원이 홀수인 경우와 성별 잔여 인원이 홀수인 경우에는 당해 인원에 대하여 1인 1실을 배정한다.(상호 협의 조정)
-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여행기간 중 타 학교 학생과 중복 수용하지 않아야 한다.
-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며, 침구는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 숙소는 반드시 영업배상 · 생산물 ·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다. 식사 등

- 제2일 조식부터 제3일 조식까지(2박 2식) 제공하며 조식은 뷔페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조식을 제공하는 식당은 숙소와 동일건물 내에 위치해야 한다.
- 식사량은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공급을 한다.
- 식사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 라.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수학여행 숙박용역업체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직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수학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 야 한다.
- 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답사 시(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예정)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모든 비용은 학교 자체부담으로 한다.

#### 마.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 용역대가 지급은 수학여행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 기타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 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 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하여 정산한다.

# 순천고등학교 1학년 수학여행 숙식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순천고등학교장(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수학여행 숙식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이 계약은 "발주기관"이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숙박용역을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위임에 의해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쌍방이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위임한 수학여행에 필요한 숙박, 식사제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단, 계약 당시의 세부일정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쌍방의 합의 하에 변경될 수 있다.

**제4조【수학여행 일정】**수학여행 일정은 2024. 10. 30.(수)부터 2024. 11. 1.(금)까지 1개 학년(10반) 2 박 3일간으로 서울특별시 일원에서 수학여행을 실시한다.

제5조【여행인원】① 현장체험학습 예상인원은 학생 232명(인솔교직원 12명 별도)으로 하되, 실제 참가 인원은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 등으로 인하여 증감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은 출발 3일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확정인원을 통보하며, 행사 종료 후 실제 참여 인원수로 정산한다.

제6조【경비】① 경비는 수학여행일정에 따른 숙박비, 식비, 제세공과금 등을 포함한 일체의 숙박경비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으로 한다.

제7조【숙박시설】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관광진흥법」제4조에 의한 관광호텔업[1264]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의한 숙박업[5220]으로 견적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고, 영업,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가. 숙소는 여행 코스를 고려하여 인근에 위치하고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3성급 이상 의 호텔이어야 한다.

나. 숙소 1실당 면적은 학생 숙박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하고 수용인원은 2인 1실을 기준으로 전체 인원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2층침대가 들어간 객실은 배제하고 타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 다. 숙소는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와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 라. 숙박시설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현장체험학습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마.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2. 숙박업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3.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 4.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등)
- 5. 객실배치도 1부
- 6.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7.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 제8조【식사 등】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뷔페식 조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제9조【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① 수학여행은 숙소에 도착하는 시점부터 수학여행 일정을 마치고 숙소를 출발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제10조【사고 및 책임】① 숙박기간 중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발주기관"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수반 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은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학생들에게 단체로 제공된 식사는 반드시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 하여야 한다.

제11조【여행경비의 지급】① 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 또는 감 액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 \* 지급대가 = 숙박 [계약금액/123실] × 이용객실 수 + 조식 [계약금액/244명] × 참여인원
-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수학여행 인솔 책임교사의 확인을 거친 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발주기관"은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계약의 이행보증】"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5% 이상의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구급약품 구비】"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을 구비 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① "계약상대자"는 입찰 및 계약 시 "발주기관"이 제시한 일정표의 내용에 따라 숙박용역을 수행하되,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②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발주기관"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책임】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체험학습자가 수학여행 도중에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수학여행 도중이나 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 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6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수학여행 숙박용역계약 특수 조건, 과업설명서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제17조【소송관할】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